

제 1 장 총 칙

제 1.1 조 목 적

1.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한다.
2. 시장경제 간 무역관계에 기반을 둔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 - 가.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(이하 “1994년도 GATT”라 한다) 제24조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달성한다.
 - 나.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(이하 “GATS”라 한다) 제5조에 합치되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한다.
 - 다. 당사국 경제에서의 경쟁, 특히 당사국들 간 경제적 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촉진한다.
 - 라. 당사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를 달성한다.
 - 마. 국제적 기준에 따라,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한다. 그리고
 - 바. 이러한 방식으로,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흐름의 증가를 이끄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한다.

제 1.2 조 지리적 범위

1. 부속서 I 을 저해함이 없이,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.
 - 가. 당사국의 영토·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역 위의 상공. 뿐만 아니라
 - 나.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 밖

2. 부속서 II는 노르웨이에 대하여 적용된다.

제 1.3 조

이 협정이 규율하는 무역 및 경제 관계

1. 이 협정의 규정은 한편으로 대한민국과, 다른 한편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적용되나, 개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하여는,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적용되지 아니한다.

2. 「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연방과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조약」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동맹의 결과로, 스위스연방은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한다.

제 1.4 조

투 자

투자에 대하여, 일방으로 대한민국과 타방으로 아이슬란드·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간에 별개로 체결된 투자 협정을 참조한다. 이들 당사국들에 대하여 그 협정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1.5 조

다른 협정과의 관계

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당사국들이 회원국인 그 밖의 국제협정상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.

제 1.6 조

지역 및 지방 정부

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, 그리고 중앙·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자

국 영역 안에서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.

제 1.7 조

특혜 협정

이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무역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, 관세동맹, 자유무역지대, 국경무역을 위한 협정 및 그 밖의 특혜 협정의 유지 또는 설립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